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26. 3. 13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2. 27. 차해영 의원 외 7인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5.

다. 상정일자: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26. 3. 13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차해영 의원

### 가. 제안경위

1) 제안자 : 차해영 의원 외 7인

2) 제안일 : 2026. 2. 27.

3) 회부일 : 2026. 3. 5.

### 나. 제안이유

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, 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량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안됨.

### 다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3조 및 제5조)

- 3) 수리 문화 확산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(안 제6조)
- 4)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- 5)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 라. 참고사항

### 1) 관계법령

- 가)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
- 나) 「소비자기본법」
- 다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라) 「제조물책임법」

### 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고

### 3) 기타

- 가) 입법예고 : 2026. 2. 23. ~ 2026. 2. 27. (의견 없음)

## 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- 탄소중립 실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대량 생산·소비·폐기 위주의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,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경적·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수리할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1조 ~ 제2조(목적 및 정의)는 「소비자기본법」 및 「순환경제법」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대상이 되는 ‘생활용품’의 범위를 규정함.

- 안 제3조(책무)는 구청장에게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구민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.
- 안 제6조(지원사업)는 현실적 측면의 무상 공구 대여 및 수리 전문가 양성으로 실질적인 수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 다만, 재정적 측면을 보면 지원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(제1항),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과 집행의 효율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- 안 제7조(수리활동지원단)는 전문 인력을 통한 자문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, 경기도 사례와 유사하게 실무 중심의 조직 구성이 기대됨. 다만, 기존의 ‘우리동네 맥가이버’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‘고쳐 쓰는 생활양식’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려는 선제적 입법으로 평가됨. 특히 「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자치법규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,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리 행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현행 「제조물 책임법」 제2조제3호<sup>1)</sup>에 따르면 “제조업자”란 제조물의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제조업자”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제조물의 제조·가공 또는 수입을 업(業)으로 하는 자

제조·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의미하며, 이 경우 제조물을 ‘가공’한 자 역시 제조업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. 따라서 수리 과정에서 제품의 본질적 구조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변경 또는 가공 (Modification)이 이루어질 경우,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제조사가 아닌 수리 주체(구 또는 사업 수행 단체)가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무과실 책임의 법적 주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-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제정안의 정책적 의의를 살리면서도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- 우선 수리 대상 품목을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‘단순 생활용품’ 중심으로 구체화하고, 수리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수리 완료 이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수 절차를 마련하고,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근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 구조의 변화 및 원제조사의 보증(AS) 효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 역시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나. 제조물에 성명·상호·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(識別)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(誤認)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

제3조(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,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

1.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
2. 내구성(耐久性)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
3.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
4.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·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
  - 가.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
  - 나.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
  - 다.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
  - 라. 재사용·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
 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

제7조(국민의 책무)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,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(耐久年限)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,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0조(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

제10조의3(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)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.

1.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(공산품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
2.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

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1. 법 제20조제1호: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
2. 법 제20조제2호: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,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
3. 제3항제1호: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,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
4. 제3항제2호: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
  - 가.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
  - 나.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
  - 다.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
    - 1)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
    - 2)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

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
2.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
##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66조(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·소비 문화의 확산)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·소비·운반 및 폐기(이하 “생산등”이라 한다)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·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·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·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,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정부는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(이하 “녹색제품”이라 한다)의 사용·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·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·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